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병역의무자 및 가족의 출입국자료 제공 요청 근거 마련〉
■ 성일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779호)

2025. 9.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덕 교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성일중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4. 14.
3. 회 부 일 : 2025. 4.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의 국외 체재 사실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행법의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규정에 근거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데, 복무 중에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여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사회복지요원의 소집이 해제되는 사람, 부 또는 모와 일정 기간 국외에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하여는 그 가족의 출입국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병역의무자 및 그 가족의 출입국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 현행법의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규정은 그 특별한 법률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결정임.

이에 병무청장 등이 병역의무자 및 그 가족의 출입국자료의 제공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취득한 정보는 관련 직무의

수행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외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및 병무지청장이 「병역법」 제60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의 연기, 「병역법」 제61조에 따른 의무이행일의 연기 등 병무 행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병역의무자 및 그 가족의 출입국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취득한 정보·자료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직무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3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u>제80조의3(출입국자료의 제공 요청)</u> <u>①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및 병무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병역의무자의 출입국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65조제2항·제6항 및 제6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 등 또는 제70조제4항·제7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기간연장허가 및 그 취소를 위하여 병역의무자 가족의 출입국자료 확</u>

현행	개정안
	<u>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가족의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u> 1. <u>제60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u> 2. <u>제61조에 따른 의무이행일의 연기</u> 3. <u>제65조 또는 제65조의2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 등</u> 4. <u>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기간연장허가 및 그 취소</u> 5. <u>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u> ② <u>제1항에 따라 출입국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u> ③ <u>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정보·자료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제1항에 따른 직무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 병무청은 국외 병역 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병역의무자나 그 가족의 출입국 관련 자료가 필요한 실정이나 관련 정보의 요청에 필요한 직접적인 법률적 근거가 없음.

<병역의무자나 그 가족의 출입국 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구 분	확인이 필요한 기록
국외체제·거주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 연기 / 귀국 시 연기사유 해소(병역법 제60조)	병역의무자의 출입국관리기록
국외여행허가 사유로 의무이행일 연기 / 귀국 시 연기사유 해소(병역법 제61조)	병역의무자의 출입국관리기록
현역병 복무 중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 시 보충역 처분 / 본인 또는 부모 귀국 시 병역의무 재부과(병역법 제65조)	병역의무자·가족의 출입국관리기록
사회·대체복무요원 복무 중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 시 소집해제 / 본인 또는 부모 귀국 시 병역의무 재부과(병역법 제65조 및 제65조의2)	병역의무자·가족의 출입국관리기록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기간연장허가 / 허가요건에 따라 본인 또는 부모 귀국 시 허가 취소(병역법 제70조)	병역의무자의 출입국관리기록 * 요건에 따라 부모 및 배우자 등의 출입국관리기록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국외체제 중인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명령(병역법 제83조)	병역의무자의 출입국관리기록

□ 과거 병무청은 병무행정에 대한 국가기관 등에 대한 일반적인 협조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80조¹⁾를 근거로 하여 개인 정보인 병역의무자 및 그 가족의 출입국 자료, 국적변동 등의 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았음.

1) 「병역법」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① 병무행정관서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보처리·통신시설을 보유하는 기관의 장에게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부각되고 정보제공 주체인 법무부의 정보 제공의 법률적 근거 미흡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을 계기로 병무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공문(제목: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심의·의결 요청, 2018.7.31.)으로 법무부의 개인 자료 제공의 법률적 가능 여부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였고,

심의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병역법」 제80조는 정보 제공 요청의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없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제5호2)에 따른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³⁾을 받아 2018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법무부로부터 병무행정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개정안은 별도의 법률적 근거가 없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병무청의 개인 정보 요청 행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봄.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문 통보, 제목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통보,(심의처리과-488(2018. 10. 30.))

□ 국방부 및 병무청은 병역의무자 및 그 가족의 출입국 자료는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데 반하여, 「병역법」 상 개인 정보 요청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원활한 병무 행정 수행을 위하여 개인 정보 요청 근거를 명문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07